

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 ( 2 )

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의 종류에는 주유취급소, 판매취급소, 이송취급소, 일반취급소가 있다.

2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 ( 2 )

3.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주유 및 급유 공지의 바닥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( 1 )

주유취급소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연보다 높게 하고,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·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.

4.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? ( 4 )

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

- 바닥면적은  $6m^2$  이상  $15m^2$  이하로 할 것
-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
-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
-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
-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$0.1m$  이상으로 할 것
-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

5.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

지 몇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? ( 3 )

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.

6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되는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몇 % 이상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는가? ( 3 )

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데,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의 20%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.